



Canada Recovery Benefit (CRB) 관련 안내문 (2020 년 10 월 6 일)

기존에 지급이 되었던 CERB 가 10 월 3 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여 안내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CERB 종료에 따라 EI 지원 자격을 낮추고, **Canada Recovery Benefit (CRB)**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와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이 추가되었습니다. CRCB 와 CRSB 는 별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앞서 CERB 를 받으셨다고 9 월 27 일부터 적용되는 EI, CRB 자격 조건이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혜택 자격조건

1. EI Benefit
2. CRB (Canada Recovery Benefit)

1. EI Benefit

1) CERB 신청을 Service Canada 로 한 경우

기존에 했던 대로 Service Canada 에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EI Benefit 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Service Canada 가 Mail 로 Notice 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Service Canada 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CERB 신청을 Canada Revenue Agency(CRA)에서 한 경우

위의 경우와 다르게 자동으로 EI 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로 Service Canada 에 EI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아래 EI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난 52 주동안 120 시간의 Insurable Hours 가 있어야함
- 자의로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야 함
- 일을 찾으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임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여야 함
(EI maternity, parental, sickness, compassionate care, and family caregiver benefits)

2. Canada Recovery Benefit (CRB)

- 보조 기간: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까지 지급 (52 주)
- Benefit 액수: 주에 \$500, 2 주에 한번 지급됨 (tax 원천징수 됨)

CRB 의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하는 2 주 기간 동안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으로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A) COVID-19 로 인해 일을 하지 않은 경우 OR

B) COVID-19 로 인해 전년도 대비 주당 평균 수입이 50% 감소한 경우

50%의 감소 여부는 주급의 평균을 계산하여 판단해야 하며, 2019 년 2020 년 또는 신청일 이전 12 개월의 평균 주당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소득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신청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이 기준을 충족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1)

2019 년 또는 신청일 이전 12 개월의 소득 (1)

\$26,000 (2019 년 또는 지난 12 개월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순소득)

$\$26,000 \div 52 = \500 (평균 주당 소득)

$\$500 \div 2 = \250 (2019 년 또는 지난 12 개월 소득의 50%)

CRB 2 주 (2)

\$100 (CRB Period 2 주간 근로소득 및 자영업 소득)

$\div 2 = \$50$ (CRB 신청 기간 동안의 평균 주급)

CRB 기간 동안의 평균 주급은 2019 년 또는 이전 12 개월 소득(1)의 50% 인 \$250 보다 적어야 하며, 위의 예로 보면 CRB 2 주의 평균 주급은 (1)의 50%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CRB 지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 다음 중 어떠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했거나 수령하지 않았어야 함:

-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 Short-term disability benefits,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Employment Insurance (EI) benefits and Québec Parental Insurance Plan (QPIP) benefits

3) E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

4) 캐나다 체류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음)

5) 최소 만 15 살 이상

6) 유효한 SIN 을 가지고 있음

7) 2019 년 또는 신청하기 전 12 개월 동안 5,000 달러(공제 전) 이상의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 employment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and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from EI or similar QPIP benefits

8) 2020 년 9 월 27 일 이후에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이지 않음

9) 신청하는 해당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음

10) 신청하는 2 주 기간 동안 합리적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음

위의 10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 되어야 CRB 자격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CRB 수령 기간 및 환원 조치 규정

CRB 는 2 주에 \$1,000 불을 지급될 예정이며 CERB 와 다른 점은 10%의 tax withholding 인 \$900 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금액을 냈다고 하여 2020 년 개인세금 신고 시 납부 세액이 없는 것은 아니며, 2020 년 연간 총 소득에 따라 개인세금 납부 세액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CRA 는 2020 년 세금신고시 CRB 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T4A 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2020 년 총 수입이 \$38,000 이상인 경우는 CRB 의 \$1 당 50 cents 씩 반납하 셔야 합니다.

Period Start and End Dates

Period 1	September 27 to October 10, 2020
Period 2	October 11 to October 24, 2020
Period 3	October 25 to November 7, 2020
Period 4	November 8 to November 21, 2020
Period 5	November 22 to December 5, 2020
Period 6	December 6 to December 19, 2020
Period 7	December 20 to January 2, 2021
Period 8	January 3 to January 16, 2021
Period 9	January 17 to January 30, 2021
Period 10	January 31 to February 13, 2021
Period 11	February 14 to February 27, 2021
Period 12	February 28 to March 13, 2021
Period 13	March 14 to March 27, 2021
Period 14	March 28 to April 10, 2021
Period 15	April 11 to April 24, 2021
Period 16	April 25 to May 8, 2021
Period 17	May 9 to May 22, 2021
Period 18	May 23 to June 5, 2021
Period 19	June 6 to June 19, 2021
Period 20	June 20 to July 3, 2021
Period 21	July 4 to July 17, 2021
Period 22	July 18 to July 31, 2021
Period 23	August 1 to August 14, 2021
Period 24	August 15 to August 28, 2021
Period 25	August 29 to September 11, 2021
Period 26	September 12 to September 25, 2021

CRB 신청은 해당 기간이 끝난 후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Period 1 에 대한 기간을 예로 들면 1 의 신청 기간의 시작은 10 월 12 일부터 입니다. CRB 의 조건이 만족한다면 매 2 주마다 CRB 리포트를 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60 일까지 소급하여 CRB 신청이 가능합니다. CRB 신청은 26 주를 넘을 수 없으며 즉 위의 테이블에서 최대 13 Period 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CRB 받은 기간을 확인하고 싶으면 CRA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현재 10 월 6 일 기준으로 CRB 신청 사이트는 개설되지 않았으며, CRA My Account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update 되는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recovery-benefit.html>

Francis Kim & Company CPA PC

김동균 공인 회계법인

200 Finch Ave. West, Suite 230

Toronto, ON M2R 3W4

T: 416-225-6504 Fax: 416-225-8574

info@franciskim.ca